



## 우대교수 규칙

규정번호	3-2-7
제정일자	1995.03.01
개정일자	2012.04.30
개정번호	Ver.7
총페이지	5

제정	1995년	3월	1일
개정	1999년	8월	1일
개정	2007년	2월	1일
개정	2010년	3월	1일
개정	2011년	3월	1일
개정	2011년	4월	11일
개정	2011년	5월	13일
개정	2012년	4월	30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를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우대교수로 위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

**제2조(자격)** 우대교수에 위촉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본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교수로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교수로서 재직중 본 대학 발전이나 학술 업적이 현저하고 특정 교육기관에 전속되지 않는 자. 단, 퇴직전 3년간의 전임교원 중 강의평가점수 순위백분율 평균이 상위 75% 이내이고 대학의 제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 자에 한함
2. 해당 전공분야에 저명한 자로서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1.4.11]

**제3조(위촉절차)** 우대교수는 학부(과) 교수 1/2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학부(과)장이 추천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2.1, 2011.3.1>

**제4조(구비서류)** 우대교수의 위촉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

1. 우대교수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적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3. 우대교수 추천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4. 기타 위촉에 필요한 서류

**제5조(위촉연한)** ① 우대교수의 위촉연한은 최장 2년으로 한다. 단, 제2조 제2호에 의해 위촉된 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2.1>

②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위촉연한을 초과하여 본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2.1>

**제6조(복무 및 처우)** ① 우대교수는 주당 6시간 이내의 전공강의를 담당할 수 있으며, 6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2.1>

② 우대교수의 강의담당 시수 중 6시간 이내의 강사료에 한하여 시간 강사료의 2배를 지급한다. <개정 2007.2.1>

**제7조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개정한다. <개정 2007.2.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b>우대교수 추천서</b>			
성 명		연락처	
주 소			
담당과목		주당시수	
학부(과) 추천의견			
상기와 같이 우대교수로 추천합니다.			
	추천자	년      월      일 학부(과)장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인) (인) (인) (인) (인)
동양미래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공 적 개 요 서

성 명	
공적개요	
교육공적	
학술연구 공적	
기타공적	

상기와 같이 우대교수에 대한 공적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학부(과)장 (인)

동양미래대학교총장 귀하

